

기후변화협약 협상동향과 국내정책

박 영 구 (아주대학교 교수)

금년말에 개최되는 제15차 당사국 총회(덴마크 코펜하겐)는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패널(IPCC)은 향후 전지구적 목표인 2°C (450ppm) 달성을 위해 선진국들은 1990년에 비해 2020년에 25~40%의 온실가스 감축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2020년에 기준배출량(BAU)대비 15~30%의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금년 중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인 노력에 선도적으로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자발적 국가목표를 수립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녹색성장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검토중에 있다. 내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정책변화에 국내기업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 국내 기업은 자체적인 능력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1. 서 언

기후변화협약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다. 현재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의 규범의 틀로 따르고 있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가 도마에 올라 칼질을 당할 형국이다. 협상의 모양새는 2012년 이후 선·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공동 노력 방안을 탐색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기존의 교토의정서

와 나아가 필요하다면 협약의 개정까지도 불사할 태세다.

협상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금년말 조금 늦을 경우 내년 중에서는 타결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주요 핵심 쟁점에서 선·개도국간 또는 이해당사국간에 보이고 있는 힘겨루기 양상은 순조로운 합의를 쉽게 낙관하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협상 분위기 속에서 OECD국가 이면서 협약에서 비부속서1국가로 분류되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더욱 조심스럽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건국 60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녹색성장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전세계 패러다임이 환경중심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모멘텀이 되긴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의 우리나라 입장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쟁점별 기후변화협약 협상동향과 국내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본다.

2. 주요 쟁점별 기후변화협약 협상 현황

가. Post-2012체제하의 선·개도국 협력체제

Post-2012기간 이후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에 있

어 선·개도국을 포괄하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개도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선진국을 넘어서 있고,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의 부속서1 국가만의 감축노력으로는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미흡하다는 인식이 설득력을 얻어 지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 13차 당사국총회에서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개도국 협력체제에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발리회의에서는 논의를 2009년말까지 종료하기로 하였으며, 논의의 편의를 위해 공유비전(Shared Vision),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술(Technology), 재원(Financing)의 5가지 핵심항목(Building Block)으로 구분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향후 협력체제를 논의키로 하였다.

먼저 공유비전 논의에서의 핵심내용은 전지구적 경제성장 패턴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기후변화에 복원력이 있는(Climate-resilient) 개발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에 기반한 저배출경제로 이동시키는 경제적 전환과 노동인력의 적정한(Just) 전환이 발생하도록 하는 공유된 비전, 즉 지구적 장기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지구적 장기 감축목표의 설정방식 및 수준은 다양하다. 가장 공감을 얻고 있는 목표로는 대기중 온실가스 집약도를 400~450ppm CO₂eq로 안정화하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수준보다 2°C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안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로부터 배출되는 전지구적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적어도 50%를 감축해야 한다.

공동의 감축목표 이외에도 공유비전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분담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선진국의 장기 감축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범위가 먼저 이슈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범주를 기후변화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Annex I 국가로 할 것인가, Annex II 국가로 할 것인가가 논쟁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 또는 non-Annex I 국가의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 역량구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2020년까지 BAU 대비 15~30%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2000년 수준의 25%까지 감축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활동은 특히 최빈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전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며,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협상에서 적응활동의 범위에 대해 다른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기존의 적응 이행 수준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응 행동을 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Response Measure(대응조치)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도 포함하자는 주장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적응의 범주안에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을 통한 수출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국가에도 실제적으로 적응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활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국그룹 뿐만 아니라 개도국 그룹에도 적용된다.

먼저 선진국의 감축활동과 관련하여 모든 선진국은 국가경제 전반적인 정량적 감축 의무(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를 포함하는 법적으로 구속적인 감축 공약 혹은 행동을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감축방식은 이미 기후변화협약내에 선진국 감축의 무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어 향후 논의에 별다른 이견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1 국가에 속하는 선진국그룹은 선진국의 범주를 모든 Annex I 당사국과 모든 EU 회원국 또는 EU 후보국과 Annex I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적 후보국들,

OECD 회원국, OECD 비회원국이나 경제발전단계가 OECD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인 국가들, 자발적으로 선진국으로 취급받기 원하는 국가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가가 선진국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선진국의 감축의무 공약기간도 2013~2017년, 2013~2020년, XXXX~XXXX년 등 다양한 기간설정 방안이 제시되어 논의되고 있다.

반면, 개도국들의 감축노력은 국가 적정감축행동(National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NAMA)의 이행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개도국 국가별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각자의 노력을 이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개도국 NAMA 이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쟁점 이슈가 있는데, 첫번째는 개도국이 NAMA를 이행하는데 있는 선진국의 지원여부이다. 개도국들은 NAMA의 이행에 있어 선행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재정, 능력배양(Capacity-Building)에 의한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 그룹은 NAMA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두번째의 쟁점 사항은 개도국이 수행한 NAMA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 보고, 검증(MRV)할 것인가이다.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MRV 이행도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지원된 재원에 대한 명확한 MRV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NAMA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기술과 재원의 문제는 모든 다른 핵심 항목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실제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볼 때,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협약 제4조에 따르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들인 부속서2국가들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재원을 지원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선·개도국간 기술이전의 경우 그 사

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선·개도국이 생각하는 기술이전 관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선진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모두 민간부문에서 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이전을 정부에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선진국의 논리이다. 그러나 개도국 입장에서 선진국과는 달리 저탄소 배출 경제성장 전략을 개도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에 응당하는 선진국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개도국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범지구적인 측면에서 기술활동계획(Technology Action Plan)과 기술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가 국제 지식재산권 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인데, 개도국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이전에 있어 기존 지식재산권 체제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실제 최근 협상에 개도국은 기존 지식재산권 체제를 무력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요구하였으며, 일례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해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기술을 공유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교토의정서하의 선진국 추가의무부담 논의

교토의정서 3.1항은 Annex I 국가 전체의 1990년 대비 감축량을 표기하고 있는데, 제2차 공약기간 및 그 이후의 Annex I 국가 전체의 감축량 수준이 현재 협상에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논의에서 일부 선진국들은 그러나 최근 이 부문에 대한 논의에서 교토의정서를 개정하자는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은 다소 큰폭의 개정 또는 새로운 의정서의 형태를 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개도국 참여를 원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최소한의 개정만으로 기존 선진국의 추가감축만으로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국에서 제시한 제2차 공약기간 중 부속서1국가의 감축수준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는 2020년까지 1990년대비 45%를, 브라질은 최소

〈표-1〉 선진국의 감축목표(2009. 6월 현재)

Annex I Party	교토목표 (1990)	2020년 목표		LULUCF 포함(1990)	LULUCF 제외(1990)	2020년 목표 (1990)	발표목표에 Offset 포함여부	
		목 표	기 준				LULUCF	메커니즘
호주	+8	-5~-15, -25	2000	-15~-33	+13~-11	-2~-22	포함	포함
벨라루스	-8	-5~-10	1990	-5~-10	-5~-10	-5~-10	미결정	포함
캐나다	-6	-20	2006	+24	-3	-3	미결정	미결정
EU27	-8	-20~-30	1990	-20~-30	-20~-30	-20~-30	-30에는 포함	포함
아이슬란드	+10	-15	1990	-15	-15	-15	포함	미결정
일본	-6	-15	2005	-8	-8	-8	제외	제외
노르웨이	+1	-30	1990	-30	-30	-30	포함	포함
러시아	0	-10~-15	불분명			-10~-15		
스위스	-8	-20~-30	1990	-20~-30	-20~-30	-20~-30	포함	포함
리히텐슈타인	-8	-20~-30	1990	-20~-30	-20~-30	-20~-30	제외	포함
우크라이나	0	-20	1990	-20	-20	-20	미결정	포함
미국*	-7	-14~-20	2005	-1~-8	0~-7	-1~-8	포함	

1990년대비 20%, 3차 공약기간에는 최소한 45%를 제시하였고, 중국의 경우 1990년대비 최소 40%를 감축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속서1 국가에서는 EU만이 2020년까지 1990년대비 30%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부속서1 국가와 발표한 국가별 감축목표 수준은 2020년에 1990년대비 6~28% 수준이며, 이는 2°C 이하 450ppm의 장기 목

표 달성을 위해 IPCC에서 제안한 선진국 감축목표인 1990년대비 40% 감축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9년 6월 현재 발표된 선진국 국가별 감축목표 수준은 〈표-1〉과 같다.

선진국의 추가 감축의무와 관련된 기타 이슈로는 교토메카니즘의 개편, 방법론 및 행정적 이슈들이 있으며, 각국의 상세 이해관계는 〈표-2〉와 같다.

〈표-2〉 기후변화협약 주요 의제별 선·개도국 입장 종합

의 제	개도국 입장	선진국 입장
향후 온실가스 감축 방안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문별 배출권거래〉 - 개도국 전반적으로 반대, 선진국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인식 〈NAMA 기초 배출권거래〉 - 일부 선발개도국 찬성 〈원자력 CDM〉 - 스위스: 강력 반대 - 중국, 인도 등: CER 가격하락 이유로 반대 〈CDM 참가자격 차별화〉 - 선발개도국: 반대(우리나라 포함) 〈온실가스 범위 등〉 - 특별한 의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문별 배출권거래〉 - EU: 찬성, 국가목표 수립 우선, CDM사업과의 중복성 배제, MRV 체계 수립 〈NAMA 기초 배출권거래〉 - EU: 관심 표명 〈원자력 CDM〉 - 미국, 일본, 프랑스: 찬성 - 스웨덴: 반대 〈CDM 참가자격 차별화〉 - 찬성: 지역적 편중성 해소, 선발개도국 감축의 무 참여 압박차원 〈온실가스 범위 등〉 - EU: 지속적인 범위 확대 주장, 벙커링 및 항공부문 포함

의 제	개도국 입장	선진국 입장
부속서1 국가의 GHG 감축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책임하에 부속서1 국가의 감축의무가 결정되어야 함 -개도국의 참여 확대는 반대입장이며,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선진국의 기술이전, 재정지원이 우선 -온실가스 추가 감축방안 분석과 연계하여 부속서1 국가의 감축목표 결정이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 개도국의 참여를 포함한 모든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 절차와 연계하여 추진 -부속서1 국가의 배출특성과 감축 잠재량을 기준으로 결정 필요 주장 -개도국의 참여와 감축방안 분석과 연계에 대다수 부속서1 국가는 찬성
기술개발 및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간의 선진국 기술이전 노력에 강한 불만 제기 -선진국의 기술이전 성과지표 개발과 실제 성과 측정용 실시 -기술의 무상이전 및 지적권 완화를 위해 선진국 정부 개입 -기술정보 입수 및 기술이용 능력 형성, 필요한 제반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재원도 함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은 원칙적으로 민간소유이며, 따라서 기술이전은 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입장 -정부는 단지 기술수요정보와 기술이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도로 개입 -현재 민간부문의 투자재원은 충분하나 단지 불안전한 투자정보에 기인하여 기술이전 미이행
HFC-22 생산설비 증설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 증설된 HFC22 생산설비의 CDM사업에 찬성하는 입장, 또한 수입금을 해당 정부에 관리, 지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 해당 설비 저감사업의 강한 제한 필요. 이들 신규설비 증설이유 검토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 필요 -캐나다 : 해당 저감사업으로부터의 생성되는 재원의 활용문제가 중요 -HFC22 시장분석 후 재논의 필요
부속서1 국가의 국가 인벤토리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2006년간 부속서1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대부분 EIT 국가의 자연적인 감축효과가 대부분 -비EIT 국가의 그간의 감축노력에 강한 비판적 입장 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대비 미국 14.4%, 일본 5.3%, 호주 28.8%, 캐나다 21.7% 증가 -교토의정서 의무달성이 현재의 정책 및 조치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
LULUCF ¹⁾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 LULUCF 관련 지침 및 원칙의 변경은 불가하고, 만약 변경시 부속서1 국가의 감축목표와 연계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슬란드 : 습지부구도 LULUCF 대상에 포함 -포스트 LULUCF만의 수량적 감축목표(부문별 접근) 가능
REDD ²⁾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타리카 : 조기활동에 대한 실적 보상 -콜롬비아 : 원격탐사 기법 적용은 가능하나 불확실성 해소 방안 강구 필요, 과거 산림전용 경향치를 외삽하여 베이스라인 결정 -콩고 및 아프리카 : 조사체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선진국 지원 필요, 대규모 투자재원 확충 방안으로 선진국의 배출권거래를 통한 재원 확보 -인도네시아 : 조사체계 및 조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며, 필요 재원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 역사적 전용추세를 감안하여 베이스라인 결정 -일본 : 개도국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다양한 자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개도국에서 제공되어야 함 -EU : 과거 산림전용 경향치를 고려하되 각국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결정
국제항공/해운부문 GHG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우디, 쿠웨이트 등 : 동 의제에 논의 자체를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 동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국가 배출합계에 포함 -미국, 캐나다, 일본 : 소극적 자세
CCS ³⁾ 기술의 CDM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국가 연합 : CCS 기술이 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아님을 들어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노르웨이 등 : 찬성

1)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변경, 산림활동

2)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개도국내 산림훼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억제

3) CCS(Carbon Capture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3. 국내 정책 동향

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환경위기와 신흥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세계인구의 증가추세 지속 등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자원부족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고, 지금까지 선진국이 선점해온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관한 격차를 줄임으로써 향후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터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08년 8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가비전 선포는 다양한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에너지정책을 비롯하여, 생활, 문화, 환경,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녹색산업의 육성 및 수출화, 에너지효율 향상기술 및 친환경 산업의 육성,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저탄소 녹색 생활환경 창출 등으로 다양한 전략들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녹색성장기획단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법정부적인 차원에서 액션플랜을 수립함과 아울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마련, 국회에서 검토중에 있다.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주요 내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행을 비롯해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경제·산업의 육성·지원, 환경친화적 세계 운영,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설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성장 관련 계획 수립시 협의,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법은 종전의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탈피, 고유가 등 자원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너지 이용효율·신재생에너지 보급·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관리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부문에 대해서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생산량·소비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 향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각 기업들이 기술개발, 산업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경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국가 협상대응과 국내 산업에의 영향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기후변화협약 협상 입장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되, 개도국내에서도 선도적인 수준의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선언하고 실제적 국내조치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구현을 위해 지난해 도야코 G8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금년중 개도국으로서 최초로 자발적 국가 감축목표를 발표하기로 선언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감축잠재량에 기초한 다각적인 감축목표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는 비구속적인 자발적 감축목표의 이행을 천명하고, 대신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 행동(NAMA)을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나아가 크레딧화하며, 배출권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녹색성장기본법(안)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는 녹색성장기본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골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법

안 검토과정에서 국내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였던 내용이며, 현재 국회 검토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미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추진을 위해서는 크게 할당, 거래, 검인증, 인센티브/패널티로 연결된 정책적 체계가 필요하며, 세부적으로 국가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할당, 부문간 할당, 할당방식 결정, 기준년도 결정, 참여대상 확정,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검증 체계 수립, 배출량 검인증 프로토콜 작성, 검인증 기관의 인정절차 수립, 배출권거래 운영절차 및 거래시스템 개발, 패널티 수준 및 방법, 인센티브 방안, 의무준수 절차 및 기관 선정 등 다양한 결정사항이 동시에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필요시 하부 배출권거래제도를 위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할당법, 검인증 관련법 등이 제정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제42조에 근거하여 산업체 목표관리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체 자발적협약을 강화한 형태로, 기업의 에너지사용량을 목표로 기업의 자발적 절약계획을 정부와 협의하여 절감량을 결정하고, 이행을 주기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실행여부를 확인하며, 절약시설투자재원에 대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금년중 시범사업을 확정하고, 내년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해당업종의 대표적인 기업은 당장 금년 혹은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대비하여 연간 2만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 인벤토리 작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래 배출량은 경제성장 전망, 생산량 전망, 생산품목의 변경, 경쟁자의 출현여부, 소비자 행태나 원재료 공급자의 행태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결국은 이러한 다양한 생산외적인 요인을 고려한 미

래예측이 필요하다.

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이 완료되면, 다음으로는 작성된 인벤토리를 근거로 사업장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감축옵션을 발굴하는 것이 다음 순서이다. 이렇게 발굴된 감축옵션의 활용으로 감축 가능한 배출량과 실제 감축옵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자료를 활용하여 각 옵션별 감축한계비용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계비용곡선(Marginal Abatement Cost, MAC)을 작성해야 한다. 이 자료는 실제 배출권거래 참여 시 배출권 구매 및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만약 배출권을 외부로부터 구매하거나 초기 할당을 경매로 배분할 경우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또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 판매 및 구매를 최종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을 조직체계의 어느 위치에서 결정해야 하는지와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각 부서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4. 맺음말

기후변화협약에서 금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교토의정서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는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나, 이들 국가의 감축 참여는 현재의 교토의정서체제를 와해시킬지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되던지, 아니면 새로운 개도국 그룹을 만들어준 선진국 수준의 감축의무를 받던지간에 당장 2013년부터 감축이행을 요구받지는 않을 듯하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금년중 우리나라의 자발적 감축목표가 발표되고 나면, 기후변화협약 협상 진행과는 별개로 선언된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은 지금까지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해왔고, 에너지 집약도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다배출부문이라는 이유로 많은 눈치를 보아왔다.

이제는 산업계의 전략이 달라져야 할 시기이다. 보다 더 조직화된 모습으로 필요하다면 국내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정부정책을 넘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함께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시사 용어 해설

▶ 다운 사이징 경영

최근의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을 보고있으면, 버블붕괴 후에 있어서의 경기후퇴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업의 활동대상인 시장은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의 내부에 있어서도 사원의 일에 대한 의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까지의 기업경영을 재평가하고, 이들 환경에 적합한 조직,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기업경영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최근 '다운 사이징 경영'이 제창되고 있다. 이 다운 사이징 경영의 특징으로서는 업무 의사결정 기능의 분산 통합화,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사원의 능력 향상, 네트워크 조직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업무 의사결정 기능의 분산 통합화가 중요하다. 이 다운 사이징 경영을 실현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직의 슬림화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업무 의사결정 기능의 분산화에는 두개의 큰 목적이 있다. 그 하나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화하고 크게 변화하고 있는 속에서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목적은 사원의 판단범위를 넓히고, 사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업무 의사결정 기능의 분산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분산화되어도, 여기에 개개인의 사원이 능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업무 의사결정 기능의 분산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사원의 능력 향상이 전제가 된다. 이제까지 기업은 어느 정도는 업무 의사결정 기능의 분산화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기업의 업무내용·환경의 복잡화, 그것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 등에 의해 경영진만으로 모든 의사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필연적으로 의사결정 기능의 분산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물론, 경영진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분산화를 추진하므로써, 부문 전체의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 업무 의사결정 기능의 분산화는 그것만으로도 기업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기업 전체의 효율화를 생각할 경우에는 분산화된 업무 의사결정 기능의 통합화가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는 대응해 가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내의 업무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조직 전체로서 조화있는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된다.